
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3.

발의자 : 김종희 · 황주홍 · 이찬열

유성엽 · 윤영일 · 김수민

박주현 · 조배숙 · 장병완

이용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인·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별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·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0·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 10·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10·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·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

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